



## 알기쉬운 생활법률 사례

“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”

**Q** : 저는 35세의 주부로서 그 동안 신용카드의 과다사용,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나, 최근 남편의 실직과 저의 무자력 등으로 위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. 소비자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,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?

**A** : 소비자 파산절차란?

봉급생활자, 주부,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돼,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,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해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### 1. 소비자파산(消費者破産)의 목적

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, 파산자가 자연인(自然人)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(免責節次)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·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.

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(自己破産)이라고 하고,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## 2. 파산신청 방법

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.

- (1) 신청권자: 채권자,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(법정대리인, 파산회사 대표자, 이사, 지배인)
- (2) 관할법원: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 
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
- (3) 파산원인: 지급불능, 지급정지, 채무초과의 상태  
- 은행대출, 카드사용,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,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.
- (4) 신청장소: 00 지방법원 (파산과) 접수계
- (5) 파산신청서: 00 지방법원 (파산과)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.

## 3. 파산선고 불이익

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.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,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(복권)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·사법(公·私法)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.

### (1) 법적 제한

- (가) 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권리능력,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.
- (나) 공법상 공무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교원, 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약사,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.  
※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  
※ 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.
- (다) 파산관재인,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,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,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.
- (라) 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권리능력,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.

### (2) 경제활동의 제한

-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·구·읍·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.